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3가단957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영화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한편 총 합계금 136,300,000원 중 피고 C로부터 2023. 9. 19. 1,000,000원 및 그 이후 1,000,000원 합계 2,000,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변제하지 않은 134,3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(2024. 1. 15.자 및 4. 18.자 각 준비서면에서 피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6,300,000원을 사취당하였다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음).

2. 판단

가.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, 피고 B는 원고가 라오스를 다녀온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D 및 피고 C을 통해 원고로부터 투자받지 않겠다고 거절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,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,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.

다.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134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3. 1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심형섭

별지